

#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 352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1998. 2. 16.

제 출 자 : 제17회파주시의회  
산업건설위원회

## ☐ 수정이유

- 상위법에서 위임한 일부 규정사항이 누락되고 조문구성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함.

## ☐ 수정 주요골자

- 도로관리심의회 소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.(안 제2조제6항)
- 도로관리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“파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”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.(안 제6조)

##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항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의 공무원
2. 파주경찰서 관계자
3. 통산산업부 및 정부통신부 산하기관의 직원
4. 관할 군부대 관계자
5.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의 직원
6.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직원

안 제2조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소심의회 심의·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안 제6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수당)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“파주시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”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원 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| 수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구성) ①~② (생    략)              | 제2조(구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에서<br>추천하는 자        | 1.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의<br>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파주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자                 | 2. 파주경찰서 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통산산업부 및 정부통신부<br>산하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| 3. 통산산업부 및 정부통신부 산하<br>기관의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관할군부대에서 추천하는 자                 | 4. 관할군부대 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에서<br>추천하는 자        | 5.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의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추천<br>하는 자         | 6.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~9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| 7~9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~⑤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| ④~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신        설)                      | ⑥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<br>함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이상 15<br>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.<br>이 경우 소심의회 심의·조정을 거친<br>사항은 관리심의회 심의·조정을<br>거친 것으로 본다 |
| (신        설)                      | 제6조(수당) 관리심의회 회의에 출<br>석한 위원에게는 “파주시각종위원<br>회실비변상조례”규정에 따라 예산<br>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<br>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6조 내지 제9조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| 제7조 내지 제10조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